참여로 투명하게! 복지로 행복하게!

| 문서번호 | 기획예산과-4287 |
|------|-------------|
| 보존기간 | 10년 |
| 결재일자 | 2016.04.12. |
| 공개여부 | 공개 |

| ★주 | 무관 | 법제팀장 | 기획예산과장 | 기획재정국장 | 부구청장 | 구청장 |
|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강단 | 빈지 | 배국현 | 권태규 | 이은호 | 윤기환 | 04/12 이동진 |
| ign | | | | | | |
| 조 | | | | | | |

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 및 운영 보고



도 봉 구 【기획예산과】

→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*(※ 비고 : 검토내용 기재)*

| 구 분 |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| 해당 없음 | 비 고 (검토내용 기재)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민 참 여 | 구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(聽策)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, 아동참여 등 | | |
| 사전절차 해당여부 | • 사전절차 해당사항을 검토 하였습니까? 예) 투·융자심사, 공유재산관리계획, 행사·축제성 사업 사전심사,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등 | | |
| 전 문 가 자 문 | •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·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 | | |
| 갈 등 | •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용주차장 조성, 주정차 단속 등 | | 기존 상권 및 불법노점과의 갈등 검토 |
| 사 희 적 약 자 배 려 | •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이동영향(18세미만),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기정 등 | | |
| 선 거 법 | •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 | | |
| 안 전 | • 구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| | |
| 타 기관 | • 타 기관 협의·협력 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서울시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, 교육기관 등 | | |
| 흥 보 |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기획보도, 기고문, SNS, IPTV, 현장 설명회 등 | | |
| 바 른 우 리 말 | 행정 순화어를 사용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 | | |

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 및 운영 보고

1 추진근거

- 🔲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21차 전체회의 협조사항 : 2016. 3.30
 - 푸드트럭 영업가능장소 적극 발굴 : 서울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- 구청장 구두 지시사항 : 기획예산과 4085호(2016. 4. 7)
 - 서울시 협조사항에 대해 우리구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 보고

2 푸드트럭(음식판매자동차)

🔲 정의(개념)

- ●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・승합・화물 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시식용 으로 제작된 자동차
 - 포장마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작은 트럭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운영 ※ 포장마차(불법노점)와 주요 차이점 : 영업신고 등 행정절차 선행
 - 국내의 푸드트럭은 대부분 분식, 제과, 제빵, 음료 등을 판매





🔲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시 소요경비

- 약 800만원~1,500만원(화물자동차 값 제외)
 - 냉장시설, 가스시설, 탑차, 외관 등

차량규격: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의「별표1」

● 소형화물자동차 : 배기량 1,000cc 미만

● 경형화물자동차 : 최대 적재량 1톤 이하

● 특 수 자 동 차 : 견인용(구난용)을 제외한 특수작업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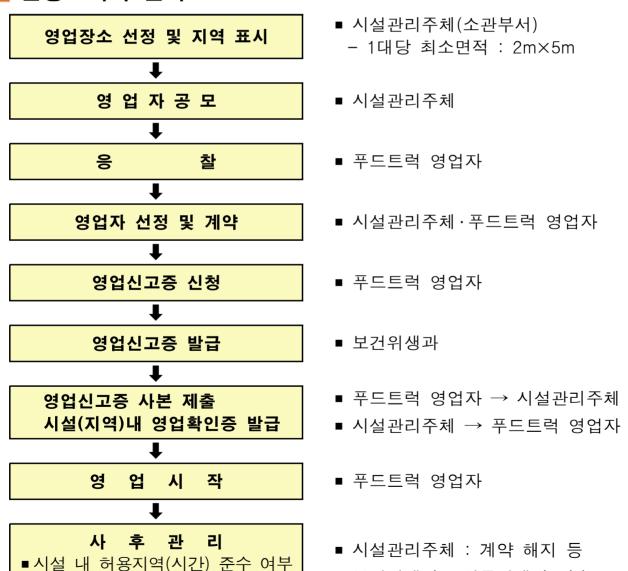
자격요건 등 :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

● 자격요건 : 청년, 소득수준, 소외계층 등 자격요건 선별적 지정

● 영업시간: 계절(월)별, 요일별, 시간별 조정

● 취급품목 : 인근 상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

■ 신청·허가 절차도



■ 신고업소 시설조사 및 위생관리

■ 보건위생과 : 식품위생법 단속

3 그 간의 추진현황

■ 추진배경

- 청년 일자리창출 및 시설이용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유원시설 내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요구 (2014. 3. 20. 규제개혁 장관회의)
- 영업장소 제한과 법령 미비로 푸드트럭 창업 부진
- 실효성 있는 푸드트럭 운영방안 마련 지시(2014.7.22. VIP)

🔲 추진경과

-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개정
 - 2014. 8.18. 유원시설 내 영업 가능토록 개정
 - 2014.10.13. 도시공원, 체육시설, 관광지, 하천 등으로 확대
 - 2015. 5.27. 대학교 추가
 - 2015. 7.21. 고속도로 졸음쉼터 추가
 - 2015.10.21. 공용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영업장소 추가
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영업장소 추가
 - 2015.11.27. 서울시 푸드트럭 조례 제정 관련 회의 개최
 - 2016. 2.23. 서울시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 공청회 개최
 - 2016. 3.24.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| 푸드트럭 영업장소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현 행 | 추 가 | | | | |
| (식품위생법 시행규칙) | (서울시 입법예고 조례) | | | | |
| ■ 영업장소 : 8개소 | ■ 영업장소 : 5개소 추가 | | | | |
| ①유원시설 ②관광지 ③체육시설 | ①공공기관 소유 또는 운영하는 문화 | | | | |
| ④도시공원 ⑤하 천 ⑥대 학 교 | 시설 ②관광특구 ③도로(보행자전용 | | | | |
| ⑦고속도로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| 도로포함) ④공공기관 주관 축제· | | | | |
| 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 | 행사장소 ⑤초·중·고등학교 | | | | |
| | ■ 영업자의 수요, 이용자의 안전, | | | | |
| |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고려하여 | | | | |
| |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| | | | |

4 서울시 및 자치구 영업장소 현황

■ 서 울 시

● 「서울 밤도깨비 야시장」에 푸드트럭 영업자 공모

| 연번 | 영업장소 | 판매상품 | 운영기간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1 | 여 의 도 한 강 공 원 물 빛 광 장 | 세계 각국 전통 수공예품 및 음식 등 | 2016.3.31~10.30 매주 금·토요일 18:00~23:00 | |
| 2 | 동 대 문 디자인플라자 | 청년창업가 아이디어상품 도시농부 먹거리 등 | 미 정 | 약117대 |
| 3 | 목동운동장 | 스포츠용품 및 캠핑요리 등 | 미 정 | |
| 4 | 청 계 광 장 | 테마에 맞춘 이벤트 상품 및 식음료 | 미 정 | |

■ 자 치 구 : 총 14대

| 연번 | 자 | 치 | 구 | 영업장소 | 운영대수 | 비고 |
|----|---|---|---|------------|------|----|
| 1 | 서 | 초 | 구 | 예술의 전당 등 | 8 | |
| 2 | 광 | 진 | 구 | 건국대학교 교내 등 | 3 | |
| 3 | 송 | 파 | 구 | 잠실운동장 | 1 | |
| 4 | 마 | 平 | 구 | 서강대학교 교내 | 1 | |
| 5 | 햐 | 천 | 구 | 서서울 호수공원 | 1 | |

<u>□</u> 서울시 및 자치구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 결과(구청장협약회 자료기준)

| 구분 | 총계 | 체육 시설 | 도시 공원 | 하천 | 관광 특구 | 문화 시설 | 노 외 주차장 | 청사 |
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계 | 178 | 17 | 50 | 41 | 3 | 44 | 22 | 1 |
| 서울시 | 121 | 17 | 8 | 30 | 2 | 41 | 22 | 1 |
| 자치구 | 57 | _ | 42 | 11 | 1 | 3 | _ | _ |

※ 우리구는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지구내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발굴했으나 우리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함.

푸드트럭 영업장소 부서별 의견

| 관련법규 | 시 설 | 영 업 장 소 | 관련부서 | 부서별 공통의견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유원시설 | 카지노 등 | 문화체육과 | ■ 푸드트럭 영업장소 |
| | 관광지등 | 관광시설, 호텔, 콘도 등 | 문화체육과 | 발굴 불가 |
| | 체육시설 | 골프장, 스키장, 승마장 등 | 문화체육과 | - 차량 노점 민원이 과다한 상황에서 |
| 식품 | 도시공원 |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 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소 | 공원녹지과 | 푸드트럭 도입시 기존 상가 및 노점간 갈등 심화 |
| 위 생 법 | 하 천 | 국가하천, 지방하천 | 안전치수과 | - 보행 및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증가 |
| | 대 학 교 | ▶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- 일반대학, 산업대학, 교육 대학, 전문·기술대학 등 | 해 당 학 교 시 설 관 리 부 서 | 예상 - 구유 일반재산은 |
| | 고속도로 졸음쉼터 | 고속국도 졸음쉼터 | 도 로 공 사 | 장소가 협소하고 대부분 주거지역에 |
| | 공용재산 | 국유재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재산 | 재 무 과 | 위치하고 있어 불가 ■ 제한적으로 푸드 |
| | 문화시설 | 공연시설,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, 공연·복지시설 | 문화체육과 | 트럭 영업장소 운영 - 구에서 주관하는 |
| | 관광특구 |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| _ | 각종 행사 프로그램 중 먹거리마당의 일 |
| 서 울 시 조 례 안 | 도 로 | ▶ 고속국도, 국도, 지방도 등 ▶ 보행자 전용도로 - 마들로 11가길 (창동문화마당 ↔ 마사회) - 마들로 11길 (하나로마트건너편 ↔ 동이청솔 뒷길) | 건설관리과 도 로 과 교통행정과 | 환으로 도입 가능하 나 짧은 행사기간으 로 영업자 응찰 여부 불확실 및 판매단가 조정필요 등 |
| | 행 사 |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주최,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 장소 또는 시설 | 전 부 서 | |
| | 학 교 | ▶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- 초등학교, 중·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| 해 당 학 교 시 설 관 리 부 서 | |

6 푸드트럭 영업장소 검토안

🔲 푸드트럭 도입의 장점

-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계층 창업에 도움(1대당 2~3명)
- 지역축제 등에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
- 화려한 외관의 푸드트럭을 도심과 주거지역의 명물로 활용

푸드트럭 도입의 문제점

-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하는 기존 자영업자와 형평성 대두
- 규제보다 무서운 불법노점의 텃세로 인한 갈등 초래
- 보행로 축소로 인해 도보 불편 및 판매식품의 위생 취약
- 불법 푸드트럭이 발생하여 혼잡 초래

푸드트럭 영업장소 검토안

- 푸드트럭 규제개혁의 핵심은「영업장소」
 -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의 양성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는데, 이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허가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임.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 발생 등으로 영업장소를 발굴하는데 소극적임.

●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필연적 갈등 발생

- 자 영 업 자 : 비싼 임대료로 인한 상대적 억울함과 영업손실 발생
- 푸드트럭업자 : 불법노점과 불법푸드트럭과 형평성 발생(장소, 판매품목 등)
- 불법노점상 : 장기간 점유했던 자리에 대한 텃세

● 우리구 여건 및 향후 추진방향

- 정부 및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자체에 푸드트럭설치 장소 발굴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, 우리구는 도로의 협소성에 따른 공간부족과 다양한 유동인구 부족으로 적당한 장소가 없음.

- 유동인구가 많은 **창동역 및 쌍문역 주변은** 이미 자영업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도 불법노점 등으로 인해 포화 상태임.
- 따라서, 일자리창출과 갈등 발생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 타 자치구의 추이를 보고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다만, 부득이하게 영업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면, 「플랫폼 창동 61」 개장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인 「마들로 11길(창동역1번 출구↔동아청솔 뒷길)」에 대해 영업장소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.

